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진삼성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05-10
----------	---------

발의일자 2005. 3. 3

발 의 자 진삼성,성재운,김기석,
박종권,최갑현,이문상

1. 의결주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하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은 야생 포유류·독사류·벌류를 말하고 농업인은 농업·임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함.
- 나. 지원대상요건은 피해시점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서 시관내에서 농업생산활동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다. 피해신고는 즉시 신고하고 시장은 피해지역 마을 이·통장과 피해농가 임회하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함.
- 라. 피해액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으로 함.
- 마. 지원제외대상은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는 제외됨.

바. 피해액 산정과 의결,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단 사망시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함.

4. 주요토의 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시행시는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

다. 검토 : 기획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농정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05. 2. 7 ~ 2055. 2. 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포유류·독사류·벌류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피해시점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시관내에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피해신고) 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피해지역 마을 이·통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을 말한다.

②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피해지원업무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야생동물피해지원업무담당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사천시의사회회원 1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피해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지원금의 지급) ①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8.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 발생 상황	피해 지역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 발생 일시		
	가해 야생 동물		
	피해 내용 (발생경위)		
	피해 신고 금액	계	내 용
	원	0진료비 : 0 0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사 천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			수수료 없 음

참고자료

□ 야생동·식물 보호법

第12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2004. 8. 11(2004-102호)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농촌·농업법기본법시행령

○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1호에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04. 2. 9일 법률 제7167호로 제정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금년 2.1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환경과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멸종에 이르지 않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야생동물을 음성적으로 처분하거나 살생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이제는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하는 등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물보호가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사항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게 전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멧돼지나 독사, 벌에 의한 부상과 사망

사건이 간혹 발생하였습시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상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시 지역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보호 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진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조례를 구상할 때에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지원도 고려해 봤습시다만 농작물 피해관계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2조에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시는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명피해부분만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거하여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입법예고도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도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